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정부는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분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19.4.12. 09:00를 기점으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시행합니다.
3. 관세청은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에 따라 석유수입업자의 휘발유.경유.LPG부탄 수입과 관련하여 한시적\*(<sup>①</sup>4.1.~5.6. <sup>②</sup>8.1.~8.31.)으로 수입신고를 제한합니다
  - (1) 휘발유.경유 : 전년 같은 기간 "판매량"\* 대비 115% 초과 수입량  
\* 석유관리원 신고자료 기준
  - (2) LPG부탄 : 전년 같은 기간 "수입량"\* 대비 120% 초과 수입량  
\*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4.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제한기간 중(<sup>①</sup>4.1.~5.6. <sup>②</sup>8.1.~8.31.) 업체별 수입신고 물량을 누적관리하여 초과된 물량이 수입신고될 경우 신고를 불허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정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오니, 업계에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가안정법 제9조 및 제26조)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11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정제업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18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18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18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석유수입업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 및 8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18년 같은 기간 석유수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2019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 제1항의 "2018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18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과 8월에 반출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④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

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중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동항에 규정된 기간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19.11.30.일까지 적용한다.